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

학교배상책임공제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5가지 보상 포인트

- 1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사고
- 2 학교 직원 노무업무 중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사고
- 3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의 차량 피해
- 4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 분실·파손 사고
- 5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이란?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배상책임 사고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공제사업입니다.

사업시행 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함)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6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사업 승인

사업 주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법」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립)

가입 대상

「학교안전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

가입 방법

학교(유치원)장의 공제청약에 따라 공제중앙회의 승낙을 받은 경우 공제가입자가 됨

※ 2012학년도부터 시·도 교육감이 일괄가입
→ 학교(유치원)장의 개별 청약 및 공제로 납부 불필요

가입 기간

매년 3월 1일 ~ 다음해 2월 말일

피공제자

공제가입 학교(유치원) 소속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보상대상

-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업무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 직원 노무업무의 범위 : 예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학교급식 조리, 그 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시설물 관리 제외)
-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업무대행 서비스

- 학교배상책임 사고와 관련하여 피공제자 대상 상담 및 경호서비스 제공
-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소송에 대한 협조 및 절차 대행

보상한도

- 인적손해 : 1인당 최고 1억5천만원
 - 부상 3천만원, 장해·사망 1억5천만원
 - ※ 1사고당 보상한도 : 20억원
- 물적손해 : 1사고당 1억원
- 학생 휴대품 파손·분실 손해 : 1학교당 연간 2천만원
 - ※ 1대당 보상한도 : 100만원
- 급식과태료 : 1사고당 500만원(자기부담금 10% 공제)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사고

인적 피해 사고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를 한 학생이 보행자와
부딪혀 상해를 입힌 사고



체육수업 중 학생이 찬 축구공이
학교 담장을 넘어 지나가는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물적 피해 사고



야구부 훈련 중 학생이 타격한
파울볼이 학교 휨스를 넘어
학교 인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전면유리가 파손된 사고



학교 행사를 위해 외부업체에서
대여한 카메라가 학생의 발에 걸려
파손된 사고



체육수업 중 학생이 찬 축구공이
학교 담장을 넘어 인근 도로에서
주행한 차량이 파손된 사고

학교 직원 노무업무 중 발생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사고

인적 피해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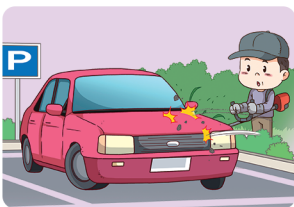


학교 직원이 교내 예초작업을
실시하던 중 돌맹이가 학교 담장
밖으로 튀어, 지나가는 행인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



학교 직원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리어카를 끌고 이동 중
보행한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

물적 피해 사고



학교 직원이 교내 예초작업 중
주차장에 주차된 민원인의
차량이 파손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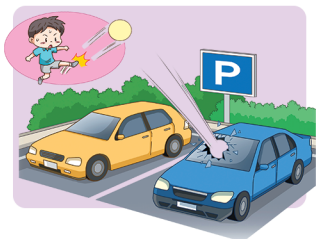


학교 직원이 급식카트를 끌고
이동 중 교내에 주차된 민원인의
차량이 파손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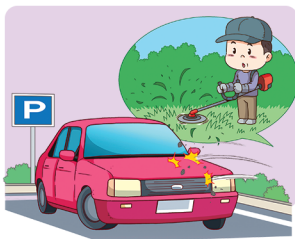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피해

차량 피해 사고



체육수업 중 학생이 찬 축구공에 맞아 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교직원 차량의 전면유리가 파손된 사고



학교 직원이 교내 예초작업 중 돌맹이가 튀어 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교직원의 차량이 파손된 사고



학교 직원이 카트에 물품을 싣고 이동 중 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교직원 차량이 파손된 사고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폰 분실·파손 사고

분실 사고



조회시간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 장소에 보관·관리 중 학생 휴대폰이 분실된 사고

파손 사고



조회시간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관리 중
학생 휴대폰이 파손된 사고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110조에 따라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
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이
발견되어 학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학교 급식실에서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아
학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학교급식으로 제공된 음식을 섭취한 학생들이 구토, 발열, 설사 등의
증세가 있어 역학조사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학교배상 책임공제 관련



Q1

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 담보하고 있는 “교육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며 교육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활동의 범위

- ①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②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③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된 활동

Q2

학교 직원의 “노무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 직원 노무업무와 관련하여 약관 제8조 제5호에 따라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며 노무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예초작업
- ② 쓰레기 분리수거
- ③ 학교급식 조리
- ④ 그 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 (시설물 관리업무 제외)



시설물 관리업무

학교 안전법에서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삭제(제6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제7조(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등)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제정·시행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사고*는 '22.1.1.부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교육시설법 제2조제5호)

- ① 학교(교육)시설 훼손·결함 사고
- ② 어린이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
- ③ 학교승강기 배상책임 사고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 물품 또는 학생 개인 물품 파손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이외의 제3자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때문에 학교소유·관리 물품 및 학생 개인 물품 파손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학교 관리 하의 휴대품 분실 및 파손 피해는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피공제자가 별도로 민간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민간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도 사고접수를 하여야 하며 약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민간 보험사와 분담하여 보상합니다.

적용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

산정예시

- 사고개요 : A학생이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찬 공이 학교 담장을 넘어가 제3자의 차량이 파손되어 3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되었고, A학생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보상책임액 : 보험사(300만원), 공제중앙회(280만원)
- 산정식
 - 보험사 지급액: $300\text{만원} \times 300\text{만원} \div (300\text{만원} + 280\text{만원}) = 155\text{만원}$
 - 공제중앙회 지급액: $300\text{만원} \times 280\text{만원} \div (300\text{만원} + 280\text{만원}) = 145\text{만원}$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 후 공제중앙회에서 피공제자(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제중앙회에서 보상한 후에 피공제자를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배상책임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가해자 부담분)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휴대폰 분실·파손 사고의 보상한도는 어디까지 인가요?

휴대폰 파손 사고의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실제 수리비용을 보상하며, 분실사고의 경우 실제 구입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 후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보상하되, 1대당 최대 100만원, 최저 5만원을 보상합니다.(구입시점 및 구입가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저한도를 적용합니다.)

보상금액 = 구입가격 - {구입가격 × (사용월수 ÷ 3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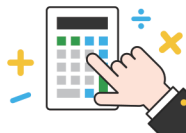
산정예시

□ 분실 시

- 휴대폰 구입일/분실일 : 2020.1.1 / 2020.12.31(사용기간 365일)
- 구입가격 : 100만원
- 보상금액 : 100만원 - {100만원 × (365일 ÷ 1095일)} = 66만6천원
- ※ 보상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파손 시

- 휴대폰 구입일/파손일 : 2020.1.1 / 2020.12.31(사용기간 365일)
- 구입가격 : 100만원
- 수리비용 : 50만원
- 보상금액 : 50만원(실제 수리비용 보상)
- ※ 실제 수리비용이 피해직전의 물품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실 시 보상액 산정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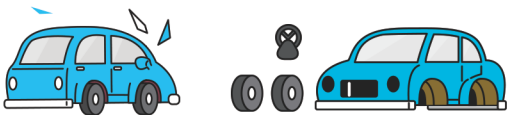


원인미상의 이유로 교직원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 보상이 가능한가요?

교직원 차량파손의 경우 파손을 CCTV 또는 블랙박스 등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등이 첨부되어야 하며, 원인미상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차량파손 사고 시 수리완료 후 청구해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차량파손의 경우 수리 전 공제중앙회와 협의된 부분에 한하여 보상하며, 공제가입자(학교장)는 정비업체 등에서 수리비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수리내용(견적서 등)에 대하여 공제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학교 소유의 드론으로 인한 사고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 소유의 드론과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공제자 이외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및 피공제자 차량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 다만, 학교 소유의 드론을 교육활동 목적 외로 사용하여 발생한 사고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서 보상이 불가하므로, 교육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 제70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상 가능한 사례

- ① 교육활동 중 교사가 시범 중 조작실수로 인해 드론이 학교 주변의 행인(제3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 ② 교육활동 중 학생이 조종한 드론에 의해 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교직원 차량이 파손된 사고

보상 안 되는 사례

- ① 교육활동 중 학생이 조종한 드론이 추락하여 피공제자(당해 학교의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
※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
- ② 교사가 교육활동 시간 외에 드론 조작(영상촬영, 점검 후 시운전 등) 중 드론이 학교 담장을 넘어가 추락하여 인근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이 파손된 사고
- ③ 교육활동 중 학생이 조종한 드론이 추락하여 드론 자체에 발생한 파손 피해
- ④ 학교 소유가 아닌 외부기관·단체(개인 포함) 소유의 드론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 「항공사업법」 제7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제5항에 따라 드론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에서 보상처리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
School Safety and Insurance Federation

